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52호 2019. 1. 04.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18-153호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4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8호 2019년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고 ----- 7
- 삼척시 공고 제9호 2019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일반) 모집 공고 ----- 10
- 삼척시 공고 제10호 2019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 13
- 삼척시 공고 제11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14
- 삼척시 공고 제13호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5
- 삼척시 노곡면 공고 제2018-4호 도로의 지정 공고 ----- 21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19-1호 도로의 지정 공고 ----- 22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8-153호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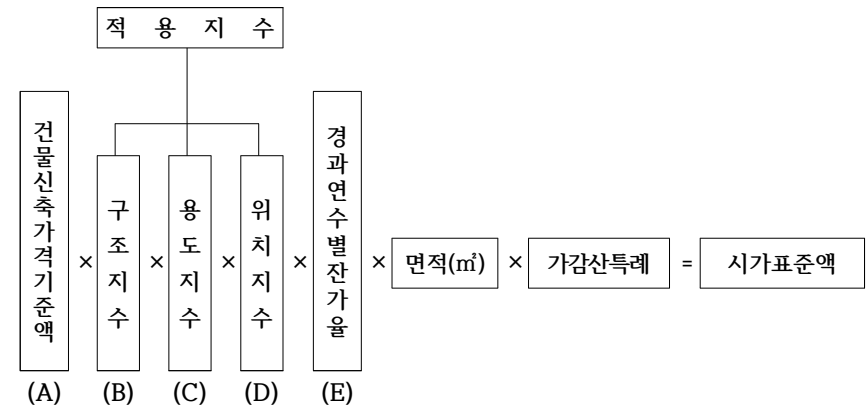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삼 척 시 장

1. 2019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가. 산출체계도



나. 산출요령

1)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m²당 금액을 산출한다.

- 2) 산출한 m²당 금액(A×B×…×E)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m²당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 3)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축물은 최종연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4)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면적(m²)}에 일 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 세부사항 : 2019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과 같음.

2.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가. 결정대상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 부수시설물, 임목,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나. 결정내용

용어 정의·해설, 종류, 연도별 잔가율표, 내용연수 및 감가율, 기준 가격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방법) 등

다.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같음.

부 칙

제1조 [적용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삼척시 고시 제2019 - 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 1. 4.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5-16 외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276-8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5-16	20190104	건물신축	20090807	지역적 특성 반영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3-2, 83-6, 84-6, 84-7, 281-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689	20190104	건물신축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산맥)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40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길 608-8	20190104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357-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길 3	20190104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5		이	하	여	백		
6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고시일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276-8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5-16	20190104	건물신축	20090807	지역적 특성 반영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3-2, 83-6, 84-6, 84-7, 281-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689	20190104	건물신축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산맥)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40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길 608-8	20190104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357-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길 3	20190104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총계	4건						

삼척시 공고 제2019-8호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삼척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1월 4일

삼척시장

1. 2019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② 청구 서명인수
59,066	7,384

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등록자 + 외국인)

- ▶ 주민등록자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삼척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 외국인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삼척시에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
 - ※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② 청구 서명인수

- ▶ 투표청구 서명인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

2. 2019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

① 삼척시장

① 청구권자 총 수	②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서명인 수	서 명 명 읍면동수	읍면동별 최소 서명인수		지역균형요건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 수	청구권자 총 수 의 15 / 100
			읍면동	최 소 서명인수	하한 (5/10000)	상한 (100/10000)		
59,064	8,860 이 상	4개 읍면동 이 상	도계읍	591	30	591	10,356	1,554
			원덕읍	591			4,919	738
			근덕면	591			5,025	754
			하장면	193			1,283	193
			노곡면	106			703	106
			미로면	270			1,794	270
			가곡면	103			685	103
			신기면	95			630	95
			남양동	591			7,237	1,086
			성내동	591			7,181	1,078
			교 동	591			11,406	1,711
			정라동	591			7,845	1,177

①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등록자 + 외국인)

- ▶ 주민등록자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삼척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 외국인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삼척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②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 ▶ 1/3 이상(4개 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수
 -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이상, 100/10,000 이하 범위에서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 산정된 서명인 수가 선거구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미만인 경우에는 5/10,000로하고, 100/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10,000으로 함.

② 삼척시의원

선거구	① 청구권자 총 수	②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서명인 수	서 명 읍면동수	읍면동별 최소 서명인수		지역균형요건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 수	청구권자 총 수 의 20 / 100
				읍면동	최 소 서명인수	하한 (5/10000)	상한 (100/10000)		
“가” 선거구	32,650	6,530 이 상	2개 읍면동 이 상	도계읍	327	17	327	10,356	2,072
				하장면	257			1,283	257
				미로면	327			1,794	359
				신기면	126			630	126
				성내동	327			7,181	1,437
				교 동	327			11,406	2,282
“나” 선거구	26,414	5,283 이 상	2개 읍면동 이 상	원덕읍	265	14	265	4,919	984
				근덕면	265			5,025	1,005
				노곡면	141			703	141
				가곡면	137			685	137
				남양동	265			7,237	1,448
				정라동	265			7,845	1,569

①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등록자 + 외국인)

- ▶ 주민등록자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삼척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 외 국 인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삼척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②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 ▶ 1/3 이상(2개 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수
 -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이상, 100/10,000 이하 범위에서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 산정된 서명인 수가 선거구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미만인 경우에는 5/10,000로하고, 100/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10,000으로 함.

삼척시 공고 제2019-9호

2019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일반) 모집 공고

삼척시 2019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삼척시장

1. 모집인원 : 89명(산불방지 모니터링 요원 2명 포함)

읍 면	모 집 인 원	비 고
합 계	89	진화차 11
본 청	22	진화차 3 (모니터링 2명)
도 계	9	진화차 1
원 덕	9	진화차 1
근 덕	9	진화차 1
하 장	8	진화차 1
노 곡	8	진화차 1
미 로	8	진화차 1
가 곡	8	진화차 1
신 기	8	진화차 1

※ 본청 특별진화대는 추후 공고 예정

2. 신청자격

- 가. 삼척시 거주자로 2019년 현재 주민등록이 삼척시로 되어 있는 사람 (해당근무지에 10분 이내 출동 가능한 거리 거주자 우선 선발)
- 나. 산불예방 및 감시·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 공무원채용 기준에 준하는 신체검사를 제출하여 적합판정 받은 자
- 다. **연령제한 : 만18세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라. 진화차량 운전 및 작동법 숙지가 가능하며 농업부산물 공동소각 및 인화물질제거작업 가능한 자

3. 참여제한

- 가. **만 65세미만인자 중 2년연속 참여자(2017년, 2018년 참여자)**
- 나. 고소득자(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초과, 1인가구는 120%초과)

다. 고액자산가(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금액이 2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라.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장애인.청각, 간질, 정신질환, 1급2급3급 중증장애인)

마. 고교, 대학, 대학원 재학중인 자(야간대학생은 제외)

4. 신청 및 체력검정 장소

가.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기술교육이수증,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해당자 제출)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우대 - 해당자 서류첨부

나. 접수기간 : 2019년 1월 7일 ~ 2019년 1월 11일까지

다. 접수처 : 삼척시청 산림과 및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라. 체력검정 일자 및 장소

⇒ 본청근무 신청자 : 2019년 1월 23일(수) 14:00. 삼척종합운동장 내

※ 체력검정 방법 : 등짐펌프 메고 산 오르기, 등짐펌프 메고 트랙돌기 등 (지정시간내 도착자에 한함)

⇒ 해당읍면 근무희망자 : 해당 읍면사무소 지정일자 및 장소, 방법

마. 선발절차

○ 1차 : 서류, 면접, 체력검정

○ 2차 : 채용신체검사서 확인(1차 합격자에 한함)

※ 모집인원보다 신청자 많을시 별도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선발자 확정 발표 : 2019년 01월 30일(선발자만 개별 유선통보)

※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 ① 체력검정 ② 진화대 교육 이수자
③ 저소득층 ④ 장기실업자 ⑤ 기타 취약계층
⑥ 산림자격증, 기술교육 이수자 ⑦ 부양가족 많은 자

5. 사업내용

가. 운영기간(봄철, 가을철 연중 운영)

- 봄 철 (02. 01. ~ 05. 15.)

- 가을철 (11. 01. ~ 12. 15.)

※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운영기간 변경 가능)

나. 임 무

- 산불방지계도 및 인화물질제거·공동소각 등 예방사업
○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포함) 및 진화장비의 유지관리
○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 보조
○ 기타 산림사업의 업무 보조 및 지원

6.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임금단가 : 66,800원/일

나. 근무는 1일 8시간(09시~18시), 주5일 근무 원칙, 산불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 산불발생시 주, 야간 구분없이 반드시 출동하여야 한다.

라. 4대 보험가입, 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함.

7. 산불방지 모니터링 및 업무보조 요원 별도선발 기준

가. 모집인원 : 2명(남녀 제한없음)

나. 근무장소 : 산림과 및 산불종합상황실

다. 신청자격 : 컴퓨터 활용하여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 할 수 있는 자
- 컴퓨터 활용 인터넷 검색할 수 있을 정도 능력만 있으면 됨

※ 모집인원보다 신청자 많을 시 다음 우선순위를 고려 선발

①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② 청년실업자(35세 이하인 자)

③ 유경력자 우대 ④ 저소득층

※ 산불방지 모니터링 운영요원은 체력검정 생략

※ 기타 선발관련 자격 및 기준 등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선발과 동일

8. 기타사항

가. 근로자중 상습적인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근로자, 중도 포기자 등은 사업 참여를 불허함.

나. 위의 제시된 내용이 외의 사항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요령』 및 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산림과(전화 570-3867) 및 해당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끝.

삼척시 공고 제 2019 - 10호

2019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1월 4일

삼 척 시 장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2018. 12. 31.기준, 단위 : 명)

19세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B)	연서대상 주민총수 (A-B)	공표일	공표방법
계	주민 등록	3년경과 등록 외국인				
59,118	59,064	54	54	59,064	2019. 1. 4.	삼척시보, 홈페이지

※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상
청구요건 : 연서대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서명 (1,182명)

삼척시 공고 제2019-11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3항 및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삼 척 시 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고
<input type="checkbox"/> 복사용지 66원 (A4용지 1매당 기준) <input type="checkbox"/> 라벨용지 249원 (라벨용지 1매당 기준)	<input type="checkbox"/> C D 956원 (CD 1장당 기준)	

삼척시 공고 제2019-13호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3일

삼척시장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인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및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안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2호의 위임 사항인 현행감면율을 2020년 12월31일까지 적용

다.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10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및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현행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의견제출

-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월 일까지 삼척시장(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의견
 - 라.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samcheok.go.kr>) 시청소식-뉴스/미디어-입법/공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세무과
- 전 화 : 033 - 570 - 3297
- 팩 스 : 033 - 570 - 3134

- 붙임 1.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2.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삼척시 노곡면 공고 제2018 - 4호

도로의 지정 · 공고

삼척시 노곡면 상천기리 67번지 상에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 ·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삼척시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노곡면 상천기리 67번지의 1필지
- 도로의 현황 : 길이 : 8m, 너비 : 4m, 면적 : 100㎡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면적	제외면적	지정면적	
노곡면 상천기리	67	전	4,225	4,136.5	88.5	김**
노곡면 상천기리	115-3	하천	1,131	1,119.5	11.5	국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19-1호

도로의 지정 · 공고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458-1번지 상에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 ·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4일

삼척시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458-1번지
- 도로의 현황 : 길이 : 33m, 너비 : 4.0m, 면적 : 97㎡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면적	제외면적	지정면적	
근덕면 용화리	458-1	전	506	409	97	차** 이**